



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

특별재난지역이란?

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를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말합니다.

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?

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재난복구비 및 국세·지방세 납부 예외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됩니다.

※ 특별재난지역은 일반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 납부 예외,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 건강보험·전기·통신·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됩니다.

특별재난지역 간접지원

① 일반재난지역 지원(18개)

- 국세 납세 유예
- 지방세 납세면제·유예
- 국민연금 납부 예외
- 상하수도요금 감면
- 재해복구자금 융자
- 보훈대상 재해위로금 지원
- 경영회생농지 매입 지원 농가 임대료 감면
- 국·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·대부료 감면
-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
-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
- 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
-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
- 과태료 징수유예
-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·유예
-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·정서 지원
- 농기계 수리
- 공공임대 주거 지원
-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



②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원(12개)

- 건강보험료 감면
-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
- 고용·산재보험료 납부유예
- 전기요금 감면
- 도시가스요금 감면
- 지역난방요금 감면
- 통신요금 감면
- 전파사용료 감면
-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
- 농지보전부담금 면제
- TV 수신료 면제
- 우체국예금수수료 등 면제

재난 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등 지원 항목 및 기준

이재민 구호 및 생계안정

- 주택이 침수·유실된 사람의 생계 안정을 위한 구호비 지원
- 주생계 수단인 농업·어업·임업·염 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의 생계지원과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
- 사업장에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
- 자금의 융자, 보증, 상환기한의 연기,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

재난복구 사업을 위한 지원

- 주택 복구, 농경지 및 염전 복구
- 농림시설 · 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복구
-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
- 수산물의 증식 및 양식 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의 입식 등

기타 지원

- 중앙대책 본부장이 재난의 예방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쓰레기 등의 처리 비용
- 그 밖에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된 지원사항

피해 신고

오프라인

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

온라인

국민재난안전포털(www.safekorea.go.kr)

국민재난안전포털 온라인 신고 방법

1



국민재난안전포털
홈페이지 접속

2



우측상단
'참여와 신고'

3



'사유재산
피해신고'
클릭

4



안내글 확인 후
자연재난 선택
체크 및 개인정보 동의

5



기본 정보와
피해정보
입력 후 저장

6



접수 버튼
누르기

7월 9일 ~ 19일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께서는

7월 31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

신고 ·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